

2025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2025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2월 13일

I. 사업개요

1. 모집기간: 2025. 2. 13. ~ 2025. 3. 7.

* 지원 수요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할 수 있음

2. 지원대상업체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 중복지원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타 기관과 인증 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지원신청 불가(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24개 인증 외의 인증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품목

☐ 농림축산식품

○ 지원대상 품목은 HSK 기준으로 농·임·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 비식품 지원 제외(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4. 지원대상 인증제도 *

No	인증명		비고
1	ISO22000**		직전 연도 2개년 내 수출실적 있는 업체에 한함
2	GFSI 승인인증	FSSC22000	
3		BRC	
4		SQF	
5		IFS	
6		Global GAP	
7		China HACCP	
8	유기인증	USDA NOP	
9		EU Organic	
10		JAS	
11		중국유기인증	
12		IFOAM	
13		유기가공식품인증(한국)	수출실적 있는 업체(미국/EU/캐나다 수출목적 인증취득)에 한함. 수출포장재 또는 수출 진행 증빙자료 첨부
14	Halal		
15	Kosher		
16	Vegan		
17	EAC		
18	Gluten-free		
19	NON-GMO		
20	FSVP		
21	VQIP		
22	재외국 등록	USA FDA (미국)	
23		BPOM (인도네시아)	
24		VFA (베트남)	

*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품질 관련 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ISO22000과 FSSC22000 중복신청 시 FSSC22000을 우선적으로 선정(ISO22000은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지원기준

☐ 지원범위 및 비율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갱신·사후)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 지원율: 인정소요비용의 70%

*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00천원)

□ 예산 지원비율

구분	배정예산 비율
수출실적(직전 연도 수출실적 USD 1,000\$ 이상) 보유업체	연간 예산 80%
수출예정업체	연간 예산 20%

* 예산상황, 신청현황 등에 따라 비율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6.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 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 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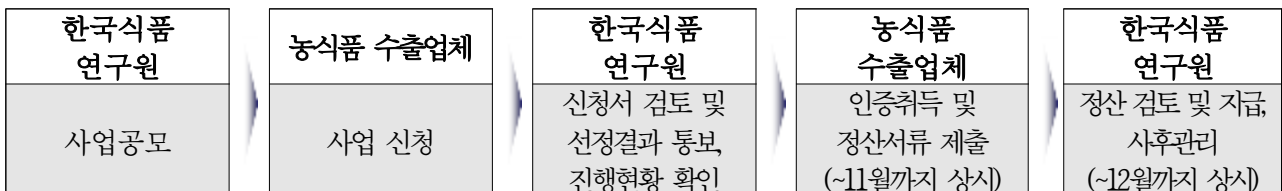
○ 계량평가(60점): 수출성장성(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및 수출준비도 평가

○ 비계량평가(40점):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 [별첨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참조

** 대기업체는 고득점 순으로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예산상황에 따라 선정됨
선정기준은 인증완료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예산배정
(대기업체는 인증완료 시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에 인증완료사항 입력)

7. 추진절차



II. 세부사항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인증 정보 및 인증 취득·수출 계획서 작성, 필수 구비서류 업로드

□ 선정기한: 모집기간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메일 개별통보 및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선정여부 확인

□ 신청 필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은 업체가 나이스평가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를 선정평가에 적용하며,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제조자 간접 수출액 포함)를 반영

** 「매출액 정보 등록 및 수출정보 제공동의」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세사업자 해당)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면세사업자 해당) 중 택1하여 제출하여야함.

- 매출액 등록 실패로 확인된 업체는 담당자에게 연락요망(ex: 법인면세사업자 등)

*** 신청서 작성 미비, 필수서류 누락, 수출실적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선정평가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있음

2. 정산방법

□ 정산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정산신청 세부내역 및 수출성과 작성, 필수 구비서류 업로드

□ 정산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정산기한: 2025.11.30.까지 (수시 정산)

* '25년 인증취득 완료 건(인증서 발급일 기준)만 정산가능, '25년 이전에 인증을 진행하여 '25년에 인증서 발급된 경우 지원 가능

** 인증취득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 정산 필수 구비서류

○ 취득인증서 사본

* 사후심사의 경우 인증서 내 당해연도 발급일자 표기되지 않을 시 인증기관의 심사보고서 추가 제출

○ 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공통: 거래명세서, 국세청에서 발행한 QR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 [별첨2] 정산기준 확인하여 정산 항목별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

□ 지급기한: 정산 전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기타유의사항

- 갱신·사후심사 및 ISO22000 신청 시 직전 연도 2개년(2023~2024년) 내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온라인 동의)하여야 함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 *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정산 시 수수료,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
- 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 8.31 이후 취소업체는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시점 변경에 따른 선정평가표 적용은 2026년부터 실시, 2025년은 종전 10.31 기준 적용)
- 배정예산 대비 집행률 50% 미만 시, 차년도 선정평가에 감점 적용 될 수 있음
- 신청인증 일부 취소 및 컨설팅기관 변경은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함
 - * 컨설팅기관 선택 시 인증 자체추진으로 신청 후 추후 해당 인증 부분취소 또는 컨설팅 의뢰로 변경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보조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청구(허위·과다·중복 청구)시 부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으며, 5년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산 신청 시 인증서 발행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컨설팅기관의 지원금 부정수급 제안(기업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컨설팅비용 과다책정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의 제안을 받은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에 신고바람
- 선정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요청 시 진행현황을 보고(온라인 입력)하여야 함

4. 문의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https://www.foodcerti.or.kr>)> 고객지원> 온라인상담
- 담당자연락처
 - 이희나 기술기능원 (063-219-9525 / leehn08@kfri.re.kr)
 - 정재훈 선임기술원 (063-219-9434 / abcjjh@kfri.re.kr)

[별첨 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2025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평가표

1. 적합성 확인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인증 적합성	취득(예정)인증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
	취득(예정)인증 품목의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
	신청업체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갱신·사후심사 및 ISO22000 신청 시 직전 연도 2개년 내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기업대상집단, 직전 연도 10/31 이후 사업취소업체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2. 계량평가(60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수출 성장성 (50점)	직전 연도 총 매출액 (금액기준)	20	50억 이상	30억 이상 5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미만
			20	17	14	11	8
	직전 연도 수출실적	20	50만불 이상	30만불이상 50만불미만	10만불이상 30만불미만	10만불미만	실적 없음
			20	16	12	8	4
	수출증가율 (직전 연도 수출액-전전 연도 수출액)/전전 연도 수출액*100	10	10%이상	8%이상 10%미만	4%이상 8% 미만	4%미만	0이하
			10	8	6	4	2
수출 준비도 (10점)	외국어 카탈로그 (인쇄본 기준)	5	보유		미보유		
			5		0		
	업체 단독 인증추진	5	전체 인증 자체추진		일부 인증 자체추진		인증 컨설팅 의뢰
			5		2		0

3. 비계량평가*(40점)

평가항목		배점	A	B	C	D	E
인증취득계획(20점)	인증취득 필요성 및 타당성	10	10	8	6	4	2
	인증취득 추진계획	10	10	8	6	4	2
인증연계 수출계획(20점)	제품현황	10	10	8	6	4	2
	수출 추진계획	10	10	8	6	4	2
계		40	40	32	24	16	8

* 신청업체에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타 업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시 해당 항목에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우선 선정 기준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 할랄인증 신청업체
- 동일점수 일 경우 직전 연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수출액이 많은 업체

[별첨 2] 정산기준

2025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기준

1. 정산개요

□ 정산신청금액

○ 정산비용 산출

- 인정소요비용 [정산 확정된 ‘인증비’ + 정산 확정된 ‘대행비’] x 70%=정산신청금액
- 정산확정된 ‘대행비’ 는 인정소요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정산

* 최종정산금액은 배정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예산상황에 따라 필요 시 조정될 수 있음)

2. 정산 세부항목 및 기준

구분	정산세부항목	기 준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 인증심사원의 인건비, 인증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심사비 및 등록비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실사비(항공료) * 해외에 소재한 인증기관 실사단의 국제선 항공료에 한함	· 인증기관 실사단(최대2인)의 국제선 왕복항공료(economy) - 항공권(e-ticket) 또는 여행사 거래명세서, 지출증빙사본 및 실사단 한국체류 세부일정 * 실사단이 다수 국내업체 실사 시 항공료는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
	제품분석비	· 인증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분석비 및 시료 운송비 (운송비 16만원 한도) -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분석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운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인증·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수행한 하랍·동물성성분 분석 건 신청 불가
대행비	통·번역비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번역 및 현장심사를 위한 통역비 - 통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통역 현장사진 - 번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번역 결과물(원문 및 번역본) *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
	컨설팅비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컨설팅 비용 (인증별 4,000천원 한도) - 컨설팅보고서, 컨설팅 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구분	정산세부항목	기 준
	예비심사비	·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예비심사(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 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 비용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u>예비심사보고서</u>,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
	교육비	·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해당 인증제도 교육비용(인증별 최대2인) - 교육기관 이수증, 교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은 신청 불가 ** 집합교육은 교육비용/참석인원수 x 2인으로 산출 (참석자명단 제출)
	인증대행 수수료 * 해외에 소재한 인증·등록기관 관련 직접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	· 인증대행(인증신청 및 접수 등)을 위한 수수료(200만원 한도) - 인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대행내역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 지출증빙사본: 국세청에서 발행한 QR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 이체증(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은 계좌이체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카드 영수증

** 환율은 실제 지출(송금 당시 적용된 환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송금 당시 환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

□ 정산불가 사항

- 시설설치비, 물품구입비,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 식비, 유류비, 선물비, 타업체 방문을 위한 실사비, 렌터카 비용 등 인증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정산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
- 증빙자료 불충분하거나 수수료,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 있는 비용
- 정산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 정산 불가

[별첨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개선 목적
예산 지원 비율	- 수출실적(직전연도 수출실적 USD 1,000\$ 이상) 보유업체: 연간 예산 70% - 수출예정업체: 연간 예산 30%	- 수출실적(직전연도 수출실적 USD 1,000\$ 이상) 보유업체: 연간 예산 80% - 수출예정업체: 연간 예산 20%	수출업체 우선 지원을 통한 수출 연계성 강화
중도 포기 기한	10.31 이후 취소업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8.31 이후 취소업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시점 변경에 따른 선정평가 적용은 2026년부터 실시, 2025년은 종전 10.31 기준 적용)	예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수혜기업 확대
집행률 관리	-	배정예산 대비 집행률 50% 미만 시, 차년도 선정 평가에 감점 적용 될 수 있음	예산 과다 신청 후 취소 방지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정산 기준	예비심사비: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예비심사비: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예비심사보고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정산기준 구체화